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서울)유진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 2020. 8. 7.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1건 개선사항 1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전환 주식 등 유가증권 리스크 관리 강화

전환주식 등을 보유하면서 주가가 취득원가 대비 20%이상 하락하여 손절매 기준에 해당하는데도 손절매 유예가 필요한 구체적인 근거 없이 형식적인 심의를 거치거나, 리스크관리협의회의 심의 없이 손절매를 유예한 사례가 있어 주가 하락시 손실이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담보권 실행을 통한 보유 주식 또는 전환권 행사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손절매 기준을 준수하고, 유예가 필요한 경우 리스크관리협의회의 실질적 심의를 거치는 등 보유 유가증권 관련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경영자문역 선임 및 운영 절차 개선

내규「경영자문역운영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퇴임 경영진 등을 경영자문역으로 선임하여 매월 일정 보수 및 사무실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퇴임 직전의 임원이 본인의 경영자문역 선임 절차에 참여하는 등 그 절차가 불투명하고, 경영자문 실적과 무관한 상당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하고 있는 등 경영자문역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향후에는 제척사유 관련 규정의 도입 등으로 선임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경영자문 실적 등과 연계된 적정 수준의 보수가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시기 바람

<관련규정>

1. 내규「경영자문역운영규정」